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600
----------	-----

2023. 04. 27.  
주택공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1. 제안경위

- 2023. 3. 28. 임종국 의원 발의 (2023. 3. 31. 회부)

## 2. 제안이유

- 한옥의 진화로 다양한 한옥 및 한옥을 재해석한 현대건축의 등장으로 건축가와 시민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존중하는 보다 편리하고 창의적인 한옥이 지어질 수 있도록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한옥건축양식 공사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을 규정함(안 제21조제2항제4호)
- 나.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 전통양식을 반영한 경우 보조 및 융자금 최대한도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안 제21조제2항제5호)

####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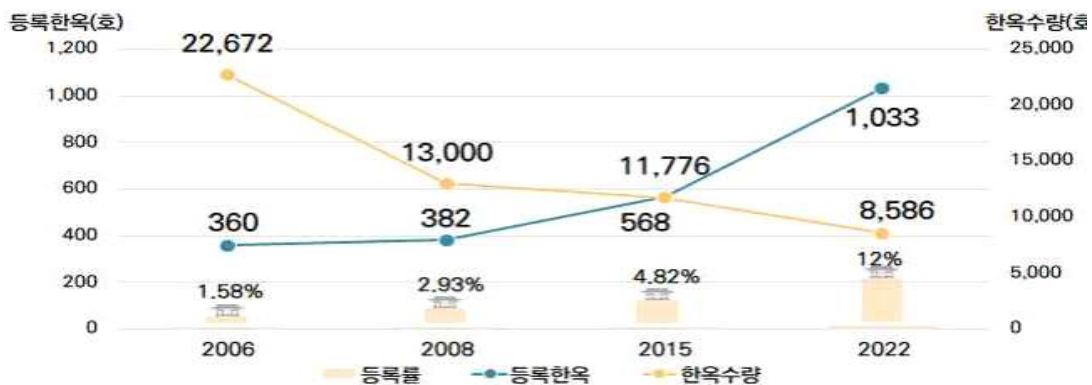
-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과 한옥건축양식<sup>1)</sup>에 대한 공사비 지원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한옥 건축의 외연적 확대와 저변화를 도모하고자, 임종국 의원이 발의하여 2023년 3월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 서울의 한옥 관리 및 지원 현황

- 서울시내 한옥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약 95%는 도심권(종로, 중구, 용산)과 서북권(서대문, 은평, 마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중 종로구(3,371동, 39.3%)에는 가장 많은 한옥이 분포하고 있음(붙임2. 참고).

<서울시내 한옥 재고 추이>

연도	한옥수량(동)	등록한옥(누적)	
	전체	등록한옥	등록율
2006	22,672	360	1.58%
2008(2기선언)	13,000	382	2.93%
2015(3기선언)	11,776	568	4.82%
2022(11월기준)	8,586	1,033	12.0%



-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 3)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서울특별시 건축자산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11개소의 한옥 밀집지역을 지정하였고,

구 분	총 계	종로구	성북구
위 치	11개소	6개소	5개소
면 적(m <sup>2</sup> )	2,282,544	2,185,484.5	97,060

-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한옥건축 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붙임1, 붙임2. 참고).

- 이외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에 대해 사업비 보조 및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등록한옥<sup>2)</sup>, 한옥마을, 한옥건축양식과 공공한옥<sup>3)</sup>, 그리고 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sup>4)</sup>의 신축 및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붙임 1. 참고).

2) 건축주가 조례 제16조에 따라 시장에게 한옥 등록신청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결정된 한옥을 말함.

3) 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을 말함.

4) **조례 제20조(지원 대상)**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옥 및 한옥마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0>

1. 등록한옥
2. 한옥마을
3.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옥건축양식
4. 공공한옥(서울특별시, 자치구 또는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이 소유한 한옥)
5. 한옥자재창고 등 한옥건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 지원금액(현행)>

(단위: 백만원)

구 분			한옥보전구역 내		한옥보전구역 외	
			외관	내부	외관	내부
한 옥	신축	보조	120	-	80	-
		용자	-	30	-	20
	전면 수선	보조	90	-	60	-
		용자	30	60	20	40
	부분 수선	보조	20			
		용자	10			
한옥건축양식		용자	40			

※ 상기 금액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등적으로 지원

-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등록한옥 중 주택(단독주택)과 위원회 자문을 통해 시장이 인정하는 비주거용도<sup>5)</sup>에 대하여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하는 경우에는 최대 8천만원까지 보조 및 용자지원하고 있으며, 한옥건축양식은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용자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한옥보전구역의 경우에는 추가로 50% 이내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음(단, 부분수선은 제외).
- 서울시는 2001년<sup>6)</sup>부터 2022년 까지 총 1,334건에 약 468억원 규모의 비용지원을 하였음<sup>7)</sup>.

5) 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6) 서울시는 2001.4.20.부터 「서울특별시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등에관한규칙」을 통해 한옥의 수선 등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였음.

7) 서울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한옥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한옥 비용 지원 심의기준」에 따른 ‘서울특별시 한옥 비용지원 심의기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계획 적용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원근거는 이 조례 제정(’16.3.24.)당시 마련 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이 없음.

## ■ 개정안 주요 내용 및 검토의견

### <개정안 주요 내용>

(안 제21조제2항제4호)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공사비용 보조 및 용자 지원 확대  
 (안 제21조제2항제5호) 한옥의 신축 및 수선(전면, 부분)에 대한 보조 및 용자금 추가지원 근거 마련

- 안 제21조제2항제4호는 현재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용자지원만 가능했던 한옥건축양식에 대해 한옥보전구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한옥의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시 허용되는 지원액 상한의 50% 이내로 보조 및 용자지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 한옥건축양식은 외관을 한옥의 기본(형태, 구조)로 유지하되, 현대식 재료 등을 사용하여 지어진 건축물을 의미하는데, 한옥건축양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①한식 목구조, ②한식지붕틀, ③한식지붕형태, ④한식형 기와, ⑤입면비례 등 다섯 가지 항목을 필수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이 개정조례안에 따라 공사비 지원 대상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됨<sup>8)</sup>.

구분	종전	변경
지원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건축양식’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 용자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옥건축양식’ 한옥 지원금의 50%내 차등지원</li> <li>- 최대9천만원(보조금+용자금)</li> </ul>
인센티브 도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법과 형태, 특성을 잘 살린 경우 인센티브 최대 20%부여</li> <li>- 공간구서배치(5%), 한식창호(5%), 목구조(5%), 가로경관(2.5%), 지붕경관유지(2.5%)</li> </ul>

8) 「서울한옥4.0 재창조 추진계획」 (2023.2.3. 서울특별시장 제9호)

<한옥건축양식 사례>



가회동 설화수의 집



창신동 여담재

- 한편, 개정조례안은 한옥건축양식의 보조 및 용자 지원 대상에서 한옥보전구역을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한옥밀집지역의 일부인 한옥보전구역 내에서는 한옥건축양식이 아닌, 한옥의 건축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나, 집행기관은 이에 대해 한옥보전구역 내에서도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구분	한옥밀집구역	한옥보전구역(지구단위계획)	
		한옥 지정	한옥 권장, 유도
비한옥 가능 여부	○	×	○ (한옥건축시 인센티브 부여)

- 이는 한옥보전구역의 경우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한옥건축을 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sup>9)</sup>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한옥건축 유도 또는 권장’으로 관리되는 지역에서 실제로는 비한옥을 중심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들을 한옥건축양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는 바, 한옥보전구역에도 보조 및 용자지원을 허용 하는 것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9) ‘한옥건축 지정’의 경우 신축 시 한옥만 건축할 수 있으며(비한옥 신축불가), ‘한옥건축 유도·권장’의 경우 비한옥도 건축이 가능하지만, 한옥으로 건축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생략)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생략)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한옥건축양식: <u>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용자지원</u>	4. 한옥건축양식: <u>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및 용자지원 (한옥보전구역은 제외)</u>	4. ----- ----- ----- ----- 용자지원

- 안 제21조제2항제5호에서 한옥의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시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한옥 전통양식을 반영<sup>10)</sup>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행 조례상 지원 가능한 금액에서 20%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한옥의 전통성 유지·계승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 종합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에 대한 공사비 지원 범위를 용자에서 보조 및 용자지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서울시 한옥 조성의 저변을 확대하고, 한옥의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한옥 건축기술의 전승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10) 추가지원 대상은 ‘공간구성 배치’, ‘한식창호’, ‘목구조’, ‘가로경관’, ‘지붕경관 유지’등 한옥의 주요 구성 요소를 충실히 반영한 한옥으로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할 것으로 확인됨.

- 다만, 공사비 등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 한옥의 구법(構法)과 특성을 구현하는데 있어 심미적·기능적으로 우수한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음.

의안심사지원팀장	김성연	02-2180-8204
입 법 조 사 관	조윤길	02-2180-8208

[붙임1] 관련법령(p.9)

[붙임2] 서울시 한옥 분포 및 관리·지원 현황(p.12)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 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마을에 대하여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한옥건축양식의 보급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옥건축양식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하거나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2. 한옥건축양식을 적용한 설계기법 및 모델의 개발·보급 사업
3. 한옥건축양식의 확산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교육사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한옥 건축양식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한옥마을은 일단(一團)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한옥밀집지역 및 한옥보전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한옥을 보전 또는 진흥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한옥밀집지역 내에서 한옥건축지정, 유도 또는 권장 등의 방법으로 규제되는 구역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한옥등록) ①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이하 “한옥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해당 한옥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한 후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한옥의 소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등록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한옥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축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및 용자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한정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다만,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용도

② 보조 및 용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한옥보전구역은 50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옥을 부분수선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으며, 용자지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28>

1. 한옥의 전면수선 등의 경우
  - 가. 한옥의 외관(한옥의 지붕, 외벽, 담장, 문간, 입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다만, 보조금 이외의 추가금액에 대하여는 2천만 원까지 용자지원

나. 한옥의 내부(한옥의 설비, 부엌, 화장실과 목욕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2.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

가. 한옥의 외관의 경우: 공사비용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8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나. 한옥의 내부의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3.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수선할 경우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지원 및 1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4. 한옥건축양식: 공사비용의 범위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융자지원

③ 동일 한옥에 대한 지원은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한옥의 부분수선의 경우에는 5년, 그 밖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면수선 또는 신축의 경우 부분수선 지원금을 제외한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다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한옥 수선 등의 비용지원을 한 경우 해당 한옥의 건축허가권자(「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에게 알리고 지원 금액을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에게 한옥 수선 등의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32조에 따른 서울 공공 건축자산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0조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 시기별 한옥 현황 및 등록율

○ 시기별 한옥현황 : 8,586동 (등록한옥 1,033동 12%)

구분	1기 (2001~)	2기 (2008~)	3기이후 (2015~)	등록한옥	서울시 전체			
					시 전체	보전상태		
						상	중	하
계	382 (1.58%)	153 (2.93%)	498 (4.82%)	1,033동 (12.0%)	8,586동	487	1,177	6,108
한양도성내	382	153	332	871동	2,874동	323	792	1,533
한양도성외	-	-	162	162동	5,712동	164	385	4,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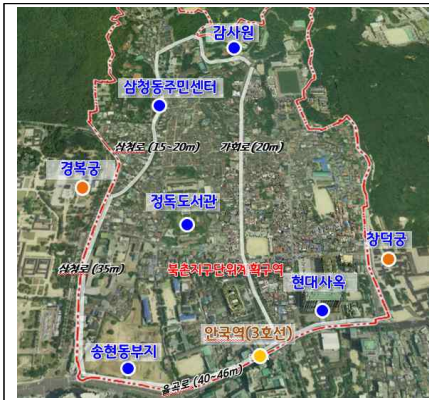
※ 근거자료 : 2006년(서울연구원), 2008년(서울대학교), 2015/2020(서울연구원)

○ 자치구별 한옥현황

자치구	2006	2014	2022	
			한옥수	비율
종로구	6,336	4,143	3,371	39.3%
성북구	4,098	2,749	1,845	21.5%
동대문	3,727	1,643	1,177	13.7%
마포, 서대문	3,830	1,426	932	10.8%
중구, 용산	2,573	1,224	694	8.1%
은평	-	29	138	1.6%
영등포, 동작, 구로	1,165	279	137	1.6%
강북, 노원, 도봉	-	63	134	1.6%
성동, 광진, 중랑	943	211	102	1.2%
서초, 강남, 송파	-	5	28	0.33%
그 외	-	4	28	0.33%
계	22,672	11,776	8,586	100%

■ 한옥밀집지역 지정 현황

연번	구분	지역명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1	종로구	북촌	가회동 등 일대	1,076,302	6개소 (2,185,484.5m <sup>2</sup> )
2		돈화문로	권농동 등 일대	137,430	
3		인사동	인사동 등 일대	122,200	
4		운현궁/조계사	견지동 등 일대	236,134	
5		경복궁서측	체부동 등 일대	582,297	
6		익선동	익선동 등 일대	31,121.5	
7	성북구	앵두마을	성북동1가 일대	31,245	5개소 (97,060m <sup>2</sup> )
8		선잠단지	성북동 일대	5,868	
9		성신여대 주변	동선동2가 일대	14,097	
10		정릉시장 주변	정릉동 일대	22,545	
11		보문동 일대	보문동6가 일대	23,305	



북촌



돈화문로



인사동



운현궁



조계사



경복궁서측



익선동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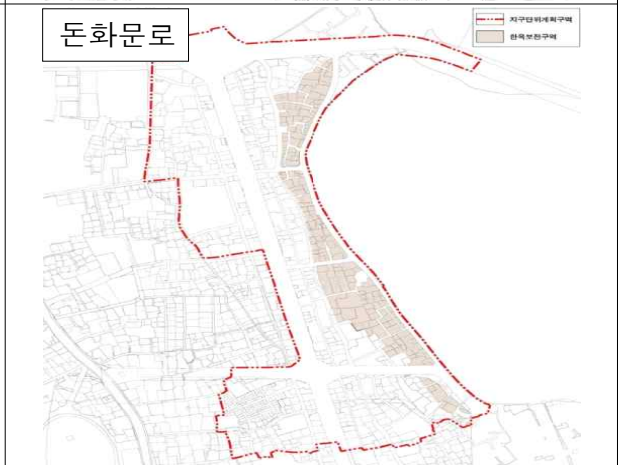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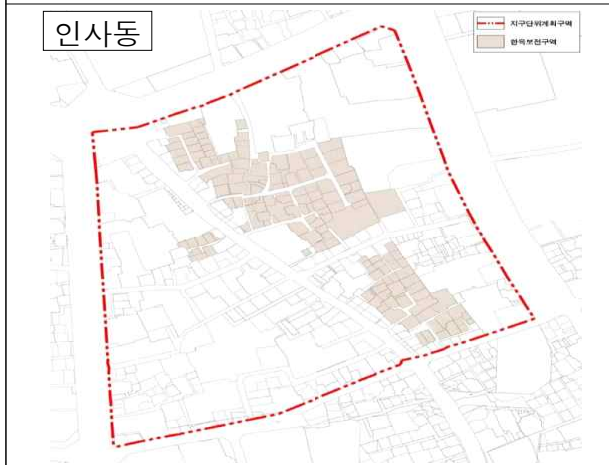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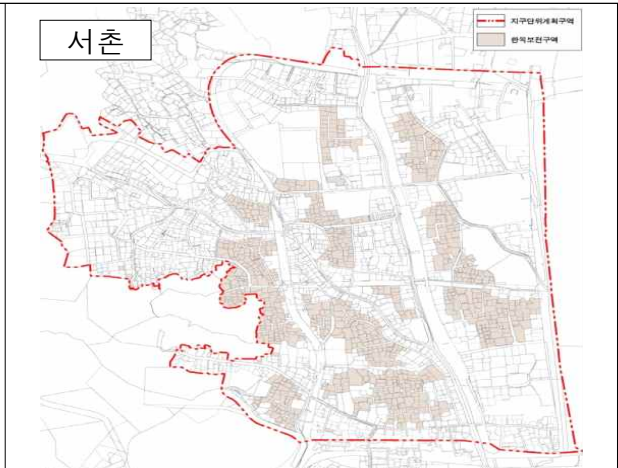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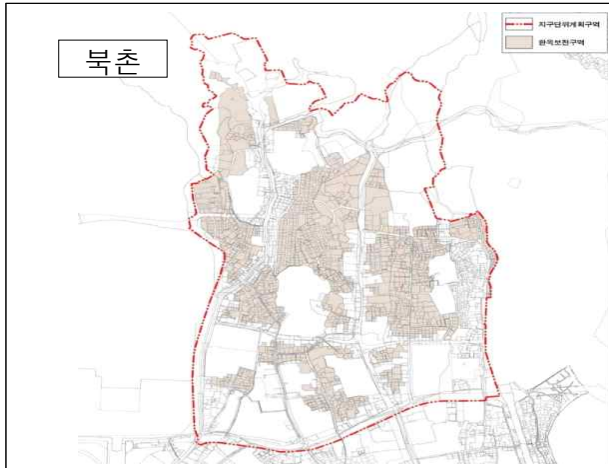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 ■ 한옥보전구역 지정 현황

연번	자치구	위치	면적(m <sup>2</sup> )	지정일	비고
1	종로구	북촌	409,090	'16.6.2.	
2	종로구	서촌	96,481	'16.6.2.	
3	종로구	인사동	19,698	'16.6.2.	
4	종로구	돈화문로	17,753	'16.6.2.	
5	종로구	익선동	7,565	'18.5.10.	
6	성북구	선잠단지	5,868	'16.6.2.	



■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비용지원 현황

- 근거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1조
- 지원방법 :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지원심의·결과에 따라 공사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한옥 등 우수건축자산 소유자 또는 건축주
  
- 지원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축	전면수선	부분수선	우수건축자산	한옥건축양식
한옥보전구역	보조 120 용자 30	보조 90 용자 90	보조 20 용자 10	보조 60 용자 40	용자 40
일반지역	보조 80 용자 20	보조 60 용자 60			

※ 비용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01~'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합 계	1,334건	500건	53건	40건	40건	42건	40건	66건	106건	95건	127건	70건	82건	73건
(보조+용자)	46,814	13,040	2,222	1,647	1,570	1,816	1,579	2,791	3,819	4,375	4,902	3,191	3,165	2,697
보조금 지원	915건	317건	28건	25건	28건	25건	27건	49건	76건	66건	98건	59건	66건	51건
지 원	35,209	9,343	1,380	1,140	1,200	1,200	1,216	2,320	2,779	3,294	3,900	2,757	2,580	2,100건
용자금 지원	419건	183건	25건	15건	12건	17건	13건	17건	30건	29건	29건	11건	16건	22건
지 원	11,605	3,697	842	507	370	616	363	471	1,040	1,081	1,002	434	585	597건